

	<h2>대학자체평가에관한규정</h2>	규정번호	3-1-05
		제정일자	2010. 5. 6.
		개정일자	2026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민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 점검·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4.1.]

제2조(평가대상) 자체평가대상은 본 대학의 학교운영 전반으로 하며, 대학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다.

제3조(평가영역) 자체평가의 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(개정 2013.6.14., 2014.4.1.)

1. 교육·연구에 관한 사항
2.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시설·설비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평가 종류 및 시기) 자체평가의 종류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대학발전계획 및 교육목표와 연계된 활동 실적 평가 : 연 1회 이상 실시
2. 삭제 <2017.9.1.>
3. 삭제 <2017.9.1.>

[전문개정 2014.4.1.]

제5조 삭제 <2014.4.1.>

제 2 장 평가기구

제6조(자체평가 총괄부서)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의 총괄은 산학기획처에서 수행하며 총괄책임자는 산학기획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 (개정 2014.4.1., 2014.10.6., 2023.9.1.)

③ 자체평가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4.4.1.)

1. 자체평가 업무 총괄
2.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안내
3. 평가자료 수집 및 검증
4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평가결과 정보공시
5. 삭제 <2017.9.1.>

④ 총괄부서는 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4.4.1.)

⑤ 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4.4.1.)

1. 총괄부서에서 요청하는 평가보고서 작성 제출
2. 평가지표 검토 및 평가결과 반영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임명·위촉하는 10인 이내의 교내위원 및 교외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. (개정 2014.4.1., 2014.10.6., 2016.1.1., 2019.8.1., 2023.3.1., 2023.9.1., 2026.3.1.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직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3.6.14., 2014.4.1., 2016.1.1.)

1. 자체평가의 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
2. 대학 자체평가 지표개발, 평가기준, 평가방법 선정
3. 자체평가 실시
4. 평가결과 분석
5.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평가
6. 삭제 <2017.9.1.>
7. 삭제 <2017.9.1.>
8. 대학 교육목표와 연계된 활동 실적 분석·평가
9. 삭제 <2017.9.1.>
10.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개선노력 실적 및 성과지표 분석·평가
11. 교육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조치 및 이행 모니터링 실시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총괄책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0조(평가계획 수립) 평가위원회와 총괄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.

제11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총괄부서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.

제12조(평가실시) ① 총괄부서에서는 평가 자료의 수집 및 검증을 통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3조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 부서 및 학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평가결과 보고) 총괄책임자는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제15조(평가결과의 활용) ① 제4조 제3호의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
②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자체평가 결과는 본 대학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정책, 행정체제 개선 등 지속적인 교육품질

유지·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.
[전문개정 2014.4.1.]

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